

등록번호	경로장애인과-59514
등록일자	2025. 12. 29.
결재일자	2025. 12. 29.
공개구분	비공개(7)

주무관	경로복지계장	경로장애인과 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	***	***	대결 2025. 12. 29. ***	전결	
협 조					

2025년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노인복지관, 군산경로식당]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 산 시
경로장애인과

2025년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도 · 점검 결과보고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한 예산, 회계, 각종 사업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하여 결과보고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

II 점검개요

- (점 검 일) 2025.12.10.(수) / 12.19.(금) / 12.22.(월) / 12.24.(수)(4일간)
- (점 검 반) 2명(경로복지계장 ***, 주무관 ***)
- (점검사항) 인사, 보조금, 후원금, 회계 등 시설 운영 전반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대상)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군산경로식당
- 대야노인복지관
☞ 2025년 군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특정감사로 대체
*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 3항 "상급기관 감사로 대체"

연번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장	운영법인	점검일
1	군산경로식당	중앙로 44-8 (대명동)	***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12.10.(수)
2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둔배미길 29 (중앙로2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2.19.(금)
3	금강노인복지관	백릉로 245 (구암동)	***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12.22.(월)
4	해누리노인복지관 (분관)	효자길 11 (오룡동)	***	사회복지법인	12.24.(수)

Ⅲ 시설별 지적사항

□ 군산경로식당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	해당없음	
1	<p>지적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특성상 중요시되는 조리시설 및 설비위생, 식재료 관리, 식당표 관리, 개인위생, 관련 서류 등 관리가 철저하고 보조금은 보탭e 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중 	해당없음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	시정 1, 주의 1	
1	<p>인사·복무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에 명시된 위원으로 회의는 진행되었으나, 위원 구성 및 임기 관련 정리된 서류가 미비하여 해당 위원의 임기 및 중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위원 구성 및 임기 현황을 정리한 서류 비치 및 관리 필요 ▶ 근무상황부 휴가 명칭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상황부에 휴가 종류를 수기로 기재하면서 ‘특별연가’ 등 운영규정과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종사자별로 사용하는 휴가 명칭이 서로 달라 동일한 휴가임에도 표기 방식이 상이 ⇒ 대체휴가, 특별휴가, 포상휴가, 연가 등 휴가 명칭을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사용 필요 	시정
2	<p>재정·회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불용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상당액의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을 지속적으로 이월 ⇒ 회계연도 내에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을 사용하여 후원의 취지를 살리고 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이 특정 재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 재원의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 	주의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 관련 규정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통합운영규정」 인사규정 제1장 제10조(인사위원회 운영)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으로 한다. (관장, 부(국)장, 과(팀)장, 외부위원 1명)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202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5p.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금강노인복지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	시정 1, 주의 3	
1	종사자 결격사유 관리 ▶ 장애인학대범죄 경력 미조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2025년 입사자 5명에 대한 경력 미조회 ⇒ 시설 내 미조회 인원 전수조사 후 범죄경력 조회 결과 서류 구비	주의
2	계약 및 보증금 관리 ▶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미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 (주)에*****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 입금 내역은 있으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누락 하였으며, - 5천만원 이하 계약임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및 지급 약속 문서를 미징구한 다수의 건이 발생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서류 등을 구비	주의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3	<p>증빙서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명령부 서류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2.27. (일**** ****), 2024.11.08. (전****), 2024.11.11. (노**** ** **), 2024.11.14. (자****) 등 출장명령부에 서류가 누락된 건이 다수 발생 ⇒ 누락된 서류 정리 및 향후 출장명령부 등 서류 정리 시 여비 지급 여부에 따른 첨부가 아닌 출장 관련 모든 서류가 정리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가족수당 증빙서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이 동일 세대에 속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된 1건 확인 ⇒ 배우자와 자녀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완 	시정
4	<p>재정·회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예수금 잔액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를 고지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회보험료는 고지된 금액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기관이 지출하여 고지액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고지 금액과 불일치하게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거나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계좌에 입금 처리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 불일치를 처리하지 않아 사회보험예수금 통장에 잔액 180,385원 발생 ⇒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근로자부담금은 환급하고 사업자부담금은 반납 조치 	주의
<p>※ 관련 규정</p> <p>○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p> <p>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p> <p>⑥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p>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해누리노인복지관(분관)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	주의 및 시정 1, 주의 1	
1	<p>출장대장 및 연가대장 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대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2025.10.17. , 2025.10.29. 관외출장(교육) 건에 대해 출장대장 미기입 - 출장 관련 참석 공문, 교육 계획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례 다수 확인 ⇒ 출장대장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철저 ▶ 연가대장·근무상황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직원의 2025.11.19.~11.21. 기간이 연가대장에는 교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대장에는 미기입 - *** 직원 2025년 8월, 10월 반가 사용 건에 대하여 근태현황상 휴가 일수 미기입 - *** 직원의 2025년 10월 근태현황에는 휴가 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전체 일자에 출근 서명 - *** 직원의 2025년 8월 근무일수가 다른 직원은 20일로 기재된 반면, 21일로 상이하게 기재 - *** 직원의 2025년 9월 근태현황에 휴가 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전체 일자에 출근 서명 ⇒ 근무상황부 전반에 걸쳐 근무일수, 휴가일수, 출장·교육 내역 간 상호 불일치가 다수 확인되어 근무일수, 휴가일수, 미사용 연가일수 등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결재가 가능한 표준화된 근무상황부 양식으로 변경하여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주의 및 시정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2	<p>계약 및 보증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 (주)오*****과 체결한 사무실 개선 공사 계약서 내용에 계약보증금, 계약목적,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 공란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음 - 5천만원 이하 계약임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및 지급 약속 문서를 미징구한 다수의 건이 발생함 <p>⇒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서류 등을 구비</p>	주의
<p>※ 관련 규정</p>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